

KB가 마련한 희망사다리가 놓여집니다

KB국민희망대출

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
은행권 대출이 어려워
불가피하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
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
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

신용등급은 올리고, 이자는 낮춰
대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
KB국민희망대출을 시작합니다



“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으세요”

대출대상	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 (재직기간 1년 이상/연소득 2천4백만원 이상)	판매기간	2023년 3월 27일(월) ~ 판매한도 소진 시까지 (5천억원 규모)
대출한도	최대 1억원 (단,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환금액 이내)	상환방법	원금균등/원리금균등 분할상환
대출기간	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(거치기간 미운영)	중도상환수수료	면제
대출금리	연 8.76% (2023.3.24 현재, MOR 12개월 변동주기, 대출기간 10년, 신용등급 5등급 기준) 최고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, 대출기간 등과 관계없이 연 10% 미만으로 운영됩니다		

* 상기 대출금리 연 8.76%는 기준금리에 신용등급, 대출기간 등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되었습니다. ※ 2023.3.24 현재, 기준금리 : 연 3.65%, 가산금리 : 연 5.11% (대출기간 10년, 신용등급 5등급 기준) ※ 기준금리 : MOR 12개월 변동주기로 운영되며,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'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'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가 적용됩니다. • 대출금리는 신용등급, 대출기간,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• KB국민희망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합니다. 단,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대출의 상환금액까지 가능하며,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라 DSR은 적용됩니다. •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 ※ 대출금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 ※ 대출금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 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•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•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• 금리제산정주기가 도래시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 •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•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. 분할상환 :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•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%의 연체가산을 더하며,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%입니다. 다만, 대출이자율이 15%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2%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•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어신부(이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•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관서, 연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청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 : 전체서비스 -> 고객센터 -> 서식/약관/설명서)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 ※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3-1049호(2023.03.23), 광고물 유효기간 2023.03.23~2023.12.31까지